

통 상 법 률

목 차

2020년 제4호 (통권 제149호)

◆ 시 론

1. 디지털 무역 규범의 국제 논의와 한국의 대응 김 흥 종 / 3

◆ 논 단

1. 중국의 WTO SPS 분쟁 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임정빈 · 전은화 / 10

디지털 무역 규범의 국제 논의와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 홍 종

디지털 무역의 확대와 WTO 전자 상거래 논의 동향

바야흐로 디지털 무역의 시대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국경 폐쇄 지속, 여행 자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일과 삶의 행태를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하며, 국내외 화상회의를 일상화한다.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받고, 소비자는 생필품 조달을 위해 온라인 쇼핑을 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스포츠, 영화, 게임, 전시, 공연, 사회관계망에 대한 소비도 증가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뿐 아니라 교육 서비스, 사업 서비스, 여가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무역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계속될수록 디지털 무역은 더욱 성장할 것이다.

디지털 무역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과 달리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WTO 차원의 규범이 없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새로운 규범이 제정되고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됐다. 뒤늦게 WTO 일반이사회가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회원국 간 주요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격년으로 모이는 WTO 장관회의(MC)에서 전자 전송 무관세 적용이 합의됐을 뿐이다. 2018년 MC-11에서 디지털 무역이 다시 논의됐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무역관련 사안(trade-related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에 대한 주요 의제를 지속해서 검토하자는 공동선언만이 남았을 뿐이다.

MC-11 이후 미 무역대표부는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과 같은 유사그룹간 이니셔티브가 WTO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9년 초 WTO 76개 회원국이 참여한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됐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온라인 회의로 전환됐지만, 각국 협상대표단의 참여는 여전히 활발하다. 협상을 위해 회람된 제안서를 한데 모은 후 큰 주제를 디지털 무역 가능, 개방, 신뢰, 공통이슈 네 가지로 구분하는 작업은 끝났다. 큰 주제를 작은 주제로 나누고 제안서끼리 공통되거나 유사한 조항을 묶는 작업이 한창이다. 디지털 무역 가능은

전자결재,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 전송 무관세를 포함한다. 개방과 디지털 무역에는 국경 간 정보이전, 컴퓨팅 설치 현지화, 신뢰와 디지털 무역에는 소스코드, 개인정보보호가 주요 주제이다. 공통이슈는 투명성, 개발, 협력을 다룬다. 제안서마다 사용한 용어와 표현이 서로 달라 제안된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제별 소그룹 회의에서 협상참여국끼리 의견을 지속해서 교환하고 교차 확인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쓰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발적 참여와 개방형 협상을 지향하는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 동참하는 국가수가 84개국으로 늘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 주제>

큰 주제	작은 주제 예시
(1) 디지털 무역 가능 (enabling digital trade/e-commerce)	종이없는 무역, 전자결재, 전자서명과 계약, 전자 전송 무관세
(2) 개방과 디지털 무역 (openness and digital trade/e-commerce)	시장접근, 국경 간 정보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비차별
(3) 신뢰와 디지털 무역 (trust and digital trade/e-commerce)	소스코드, 강제기술이전, 온라인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4) 공통이슈 (cross-cutting issues)	투명성, 개발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협력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

WTO는 2020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규범의 통합본(consolidated text)을 도출하고

MC-12까지 회원국의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 성과물을 발표하는 것을 잠정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다. 통합본 도출은 완료할

수 있겠지만, MC-12까지 네 가지 큰 주제에 담긴 조항을 대부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첫째,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규범 수준에는 큰 괴리가 있다. WTO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미국이 생각하는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다. 여기서 거래는 물물교환(barter trade)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즉, 디지털 무역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화폐 교환이 요구되지 않는다. 예컨대, 구글 검색도 디지털 무역이 된다. 직접적인 화폐 교환은 없지만, 인터넷상에서 데이터(IP 주소, 검색 내용과 시간, 지역 등)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양방향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에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 요소다. 그러나 중국이 생각하는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에 가깝다. 중국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조항이 없다. 중국에서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인터넷 검열과 필터링이 존재한다.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이나 알리바바 전 회장인 마윈이 주장했던 e-WTP(World Trade Platform)를 살펴보다

라도, 디지털 무역 규범을 향한 중국의 최소 접근법(minimal approach)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접근법(liberal approach)과 대조적이다.

둘째, 개방과 신뢰에 관한 논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도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중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싶은 미국은 컴퓨터 설비 설치 의무와 같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 소스코드 공개 요구, 강제기술이전 등을 철폐해야 할 제거 대상으로 바라본다. 중국은 국가안보 보호, 체제와 사회의 안정성 유지 등 국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사이버 보안법을 발효했다. 중국이 미국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이미 통과시킨 국내법을 바꾸면서까지 전자상거래 협상에 나설 리 만무하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연합은 국외로 이전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수준에서 시각이 다르다. 특히, 유럽연합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발효하면서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가 역외로 이전될 때 GDPR이 요구하는 엄격한 보호조치가 보장되도록 규정했다. 발효에 앞서 미국은 2016년 유럽연합을 설득해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사이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토록 했으나, 최근 유럽연합 법원이 프라이버시 쉴드를 무효로 판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비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EU GDPR의 정신이 담긴 유럽연합의 제안서와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을 추구하는 미국 제안서 간의 간극이 커 합의가 쉽지 않다.

셋째, 전자 전송의 영구적 무관세(모라토리엄) 여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회원국 간 합의를 더디게 하고 있다. 모라토리엄 논쟁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결 구도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전자 전송의 한시적 무관세 적용 관행은 1998년부터 격년으로 개도국과 최빈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 모두가 반대 없이 합의해 온 사안이다. 그런데도 WTO 전자상거래 협상참여국인 인도네시아가 모라토리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비참여국인 인도, 남아프리카 국가가 논의에 가세하면서, 모라토리엄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관세 부과라는 정책변수를 지켜내려는 국가들의 저항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반대 논리는 관세 수입 급락이다. 대응 논리는 관세 수입 하락폭은 작고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양쪽의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모라토리엄이 실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적·소모적 논의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를 디지털 세와 연결 지어 논의를 복잡하게 하는 시도도 있지만, 두 사안은 결이 다르다. OECD/G20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

로젝트 논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MC-12까지 WTO 전자상거래 규범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성과 도출에 목마른 WTO 입장에서 전자상거래 분야가 그나마 유망하기 때문이다. 우선, 종이없는 무역, 전자결재, 전자서명, 전자계약 등 주제에서 협상참여국 간 큰 이견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 청신호다. 쟁점화 된 모라토리엄 여부가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으나, 회원국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합의점을 모색하여 모라토리엄 문제를 조화롭게 처리할 수도 있다. 디지털 무역 가능 주제를 위주로 합의 방향이 조기수확(early harvest)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 그 때문에 MC-12에서 WTO가 전자상거래 규범에 관한 성과물을 발표한다면, 그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 먼저, 이 결과를 미국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 WTO 전자상거래 규범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는 것은 최소 접근법을 추구하는 중국의 목표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WTO 회원국을 전자상거래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독려할 때는 개방과 신뢰 주제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게 목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면 미국은 합의 이후 추가 협상을 위한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할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중국이 향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고 조기수확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미국의 당초 협상 목표에서 벗어나고 이득도 크지 않다.

결국,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 구조,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디지털 무역 규범 목표, 유럽연합과 미국의 힘겨루기 등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높은 수준으로 합의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지역 차원의 이질적인 디지털 무역 규범도 한 몫 한다. FTA에 속한 디지털 무역 규범의 포괄 범위, 깊이, 법적 집행력 등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추세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거대선진국은 CPTPP, USMCA, USJDTA, 일·EU EPA처럼 자국의 구미에 맞도록 디지털 무역 규범을 FTA를 통해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중견국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의무보다는 협력을 강조한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체결한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을 보더라도 인공지능, 디지털 정체성(identity), 중소기업 협력, 디지털 포용과 같은 신규 이슈가 등장

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가 이미 DEPA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나라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호주와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협정을 체결했고,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했다. 선진국과 중견국은 각자의 노선을 유지하고 참여가입국 수를 점차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양자/지역 차원이 디지털 무역 규범을 한 방향으로 수렴하지 못하게 하는 힘은 WTO 전자상거래 합의의 속도를 늦추고 협상을 장기화로 이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디지털 무역 규범의 큰 흐름이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WTO 전자상거래 규범 정립에만 만족할 수 없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장기에 걸쳐 답보 상태에 머무른지라도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무역규범은 지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응

코로나19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빠르다. 빠른 전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경쟁적이다. 각국 정부는 국내 데이터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무역장벽을 쌓아 올리며 전열을 가

다듬고 있다.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무역 규범을 강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BEPS 프로젝트 논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디지털 기업에 경쟁법 적용을 검토한다.

한국은 올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5G 인프라 구축 확대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을 담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가명정보 개념도 도입했다. 싱가포르와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상을 시작했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BEPS 논의에도 참여 중이다.

얼핏 보면 한국의 대응이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다. 디지털 뉴딜 정책과 디지털 무역 정책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디지털 뉴딜의 5년 정책에 상응하는 디지털 무역 정책이 없다. 데이터3법이 통과됐지만,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조항에는 규정의 변화가 없다. 데이터3법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발표된 시행령에도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출범이

EU GDPR 적정성 결정 때 도움이 되겠지만, 유럽연합이 지난 2년 동안 GDPR을 근거로 400건 이상의 위반사례에 과징금을 부과된 사실은 우리 기업의 GDPR 준수의무를 상기시킨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 규범은 한미FTA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장 한국이 CPTPP 회원국과 가입 협상을 한다면, 디지털 무역 챕터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제도 정비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영킹 실타래처럼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복잡해 보인다.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과 제도 보완 논의 중심에 디지털 무역을 놓으면 어떠한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 행위가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모든 논의에 결부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국회에서 구글의 앱 통행세 30% 부과가 뜨거운 감자다. 디지털세 도입과 반경쟁행위 조사 요청이 빚발친다. 디지털 무역이 디지털세와 경쟁법과 연결되는 것이다. 한국이 당면 현안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전을 바라보고 원칙을 세워 디지털 무역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국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현안 대응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디지털 무역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라는 조류에 떠밀리지 않고 무탈하게 편승하려면, 디지털 경제 정책의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 규제, 법제, 제도 개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내 디지털 통상전문가, 씽크탱크, 학계, 정책입안자, 시민단체, 기업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개선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필수다. 컨트롤 타워가 정부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정책 추진과 실행을 주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직하다. 디지털 통상환경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면서도 주요국이 원하는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게임의 규칙과 당위를 찾아 나가길 기대한다.

개선된 국내 규제, 법제, 제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디지털 무역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모든 정책관계자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디지털 무역 규범을 FTA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꾀하는 것은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이라는 게임 규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디지털 무역 정책과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때,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무역 규범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장착하는 것이라 믿는다. /끝/

중국의 WTO SPS 분쟁 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임 정 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전 은 화

*논문접수 : 2020. 10. 13. *심사개시 : 2020. 10. 25. *게재확정 : 2020. 11. 10.

〈 목 차 〉

I. 서론	III. 중국의 SPS 관련 분쟁사례 분석
II. WTO SPS 관련 분쟁 현황	1. 중국 관련 전체 분쟁사례(제소, 피소)
1. 개요	2.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 (DS392)
2. SPS 관련 국가별 분쟁 현황	3.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제한 조치(DS589)
3. SPS 협정 조항별 분쟁 현황	IV. 요약 및 시사점
4. SPS 분야별 분쟁 현황	

I. 서론

2001년 12월 11일 WTO 제14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세계 제1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수출은 2001년 2,661억 달러에서 2019년 2조 4,990억 달러로 연평균 14.2%씩 성장률을 보이

며 약 8.4배 증가하였고, 수입도 2001년 2,436억 달러에서 2019년 2조 771억 달러로 약 7.5배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의 농산물 교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¹⁾ 기준 2,780억 달러로 전 세계 2위의 농산물 무역대국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1년 166.3억 달러에서 2018년 827.9억 달러로 연평균 10.2%씩 증

1) 중국의 전체 무역액은 2019년까지 제공되지만, 농식품 무역 데이터는 2018년까지만 이용 가능하다(출처: <https://data.wto.org/> 최종 검색일: 2020. 8. 20.).

가하고 있으며, 수입은 2001년 210.3억 달러에서 2018년 1,951.7억 달러로 연평균 15.5%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교역 증가는 세계 농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농산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농산물 교역 증대 추세는 불가피하게 향후 농산물 무역과 크게 연관되는 SPS²⁾ 관련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WTO 가입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2건의 SPS 관련 소송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산 가금류 수입 관련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1건의 제소와 캐나다산 카놀라종자(유채씨) 수입제한 관련하여 1건의 피소가 있다. 하지만 WTO SPS 관련 분쟁에 중국은 제3자로서 16건의 분쟁에 참여하였고, 이는 EU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정부가 SPS 관련 사안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SPS협정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과의 SPS 분쟁 발생 대비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 방향과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WTO SPS 분쟁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활용하여 우선 II장에서는 WTO 체제 출범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 현황을 국가별, 조항별, 그리고 주요 분야별로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발생한 다양한 분야의 분쟁사례와 함께 중국의 SPS 관련 2건의 분쟁사례에 초점을 두고, 제소배경, 소송쟁점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중국의 SPS 관련 분쟁의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 SPS 관련 정책에 주는 교훈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지금까지 WTO체제에서 발생한 SPS 분쟁사례를 전반적인 틀에서 광범위하게 다룬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중국의 최근 분쟁사례를 포함하여 중국관련 SPS사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SPS 정책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II. WTO SPS 관련 분쟁 현황

1. 개요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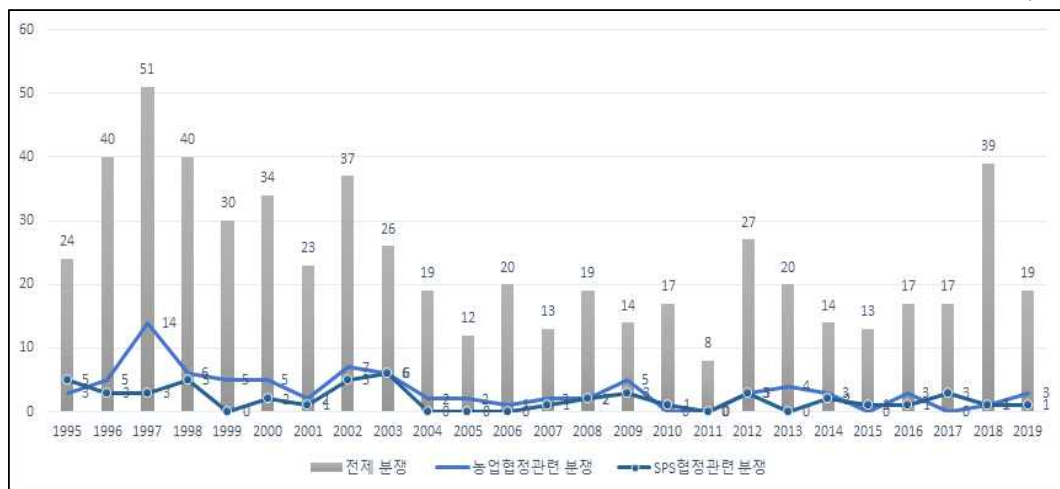
2) 본 연구에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기본적으로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을 의미하며, SPS협정에 근거하여 회원국이 시행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위생검역조치로 통일하여 용어를 사용하였다.

년까지 지난 25년간 총 593건의 무역관련 분쟁이 WTO 분쟁해결기구(DSB)³⁾에 회부 되었으며⁴⁾, 그중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관련 분쟁은 84건(전체 분쟁의 14%)이며, SPS협정(SPS Agreement) 관련

분쟁은 49건(전체 분쟁의 8%)이다. 즉 WTO 출범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23.7건의 분쟁이 발생 중이고 이 중 3.4건은 농업협정 관련 분쟁이고, 2건이 SPS 협정 관련 분쟁이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WTO 출범 이후 통상분쟁 발생 현황(1995~2019)

단위: 건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한편 지금까지 총 49건의 SPS 협정 관련 분쟁 중 21건은 농업협정 조항과도 동시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전체 분쟁에서 SPS 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 비중은 8%로 낮은 수준이지만, 2007년 이

후부터는 농업협정과 함께 연관되지 않고, 순수하게 WTO SPS 협정 위반 관련 분쟁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표 2-1 참조).

3) 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WTO 분쟁해결양해(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절차가 적용된다. WTO 체제에서 발생한 통상분쟁 번호는 일반적으로 “Dispute”의 약자와 회부된 시간순서에 따라 DS와 숫자의 조합으로 표기한다.

4)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표 2-1> WTO 출범 이후 SPS협정 관련 통상분쟁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SPS 협정 관련 분쟁	농업협정과 SPS 협정 동시 관련 분쟁	SPS 협정 관련 단독 분쟁	SPS 협정 관련 단독 분쟁 비중
1995	5	2	3	60%
1996	3	3	0	0%
1997	3	2	1	33%
1998	5	2	3	60%
1999	0	0	0	-
2000	2	1	1	50%
2001	1	1	0	0%
2002	5	3	2	40%
2003	6	3	3	50%
2004	0	0	0	-
2005	0	0	0	-
2006	0	0	0	-
2007	1	0	1	100%
2008	2	0	2	100%
2009	3	2	1	33%
2010	1	0	1	100%
2011	0	0	0	-
2012	3	0	3	100%
2013	0	0	0	-
2014	2	1	1	50%
2015	1	0	1	100%
2016	1	1	0	0%
2017	3	0	3	100%
2018	1	0	1	100%
2019	1	0	1	100%
합계	49	21	28	57%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2. SPS 관련 국가별 분쟁 현황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전체 49건의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제소한 회원국은 20개국이며, 제소를 당한 회원국은 16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제소를 가

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11건, 22%), 캐나다(10건, 20%), EU(5건, 10%), 아르헨티나(3건, 6%) 등의 순이다. 피소를 가장 많이 당한 회원국은 EU(9건, 18%), 미국(9건, 18%), 한국(6건, 12%), 호주(6건, 12%), 그리고 인도(3건 6%) 등의 순이다(표 2-2 참조).

<표 2-2> WTO SPS 협정 관련 국가별 분쟁 현황(1995~2019)

순위	제소현황			피소현황			제3자로서 참여 현황		
	국가	건수	비중	국가	건수	비중	국가	참여 건수	참여 비중
1	미국	11	22%	EU	9	18%	EU	17	35%
2	캐나다	10	20%	미국	9	18%	중국	16	33%
3	EU	5	10%	한국	6	12%	브라질	15	31%
4	아르헨티나	3	6%	호주	6	12%	미국	14	29%
5	멕시코	2	4%	인도	3	6%	대만	13	27%
6	브라질	2	4%	러시아	2	4%	호주	13	27%
7	필리핀	2	4%	멕시코	2	4%	노르웨이	12	24%
8	헝가리	2	4%	인도네시아	2	4%	인도	12	24%
9	뉴질랜드	1	2%	일본	2	4%	뉴질랜드	11	22%
10	니카라과	1	2%	터키	2	4%	캐나다	9	18%
11	러시아	1	2%	슬로바키아	1	2%	콜롬비아	8	16%
12	베트남	1	2%	우크라이나	1	2%	과테말라	7	14%
13	스위스	1	2%	이집트	1	2%	아르헨티나	7	14%
14	에콰도르	1	2%	중국	1	2%	일본	7	14%
15	우크라이나	1	2%	코스타리카	1	2%	칠레	7	14%
16	인도	1	2%	크로아티아	1	2%	한국	7	14%
17	인도네시아	1	2%	-	-	-	태국	6	12%
18	일본	1	2%	-	-	-	멕시코	5	10%
19	중국	1	2%	-	-	-	페루	5	10%
20	태국	1	2%	-	-	-	엘살바도르	4	8%
21	-	-	-	-	-	-	온두라스	4	8%
22	-	-	-	-	-	-	파라과이	4	8%
23	-	-	-	-	-	-	러시아	3	6%
24	-	-	-	-	-	-	우루과이	3	6%
25	-	-	-	-	-	-	베트남	2	4%
26	-	-	-	-	-	-	에콰도르	2	4%
27	-	-	-	-	-	-	터키	2	4%
28	-	-	-	-	-	-	남아공	1	2%
29	-	-	-	-	-	-	도미니카	1	2%
30	-	-	-	-	-	-	아이슬란드	1	2%
31	-	-	-	-	-	-	오만	1	2%
32	-	-	-	-	-	-	짐바브웨	1	2%
33	-	-	-	-	-	-	카타르	1	2%
34	-	-	-	-	-	-	파나마	1	2%
35	-	-	-	-	-	-	파키스탄	1	2%
36	-	-	-	-	-	-	필리핀	1	2%
37	-	-	-	-	-	-	헝가리	1	2%
38	-	-	-	-	-	-	홍콩(중국)	1	2%
전체	20개	49	100%	16개	49건	100%	38개	-	-

주: 1)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복수 국가가 제소한 경우 개별 분쟁 건수로 산출했다. 가령, 2개국 이 동일 분쟁 사안에 대해서 제소한 경우 2건의 분쟁으로 산출했다.

2) 제3자로서 참여 현황은 해당 국가가 제3자로 49건의 SPS 협정 관련 분쟁 참여 비중이다.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한편 WTO 통상분쟁에서 제소국 혹은 피소국도 아니지만, 해당 분쟁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 있는 국가는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는데, 2019년까지 총 49건의 WTO SPS 협정이행 관련 분쟁에서 38개 국가가 제3자로 참여하였다. SPS 관련 분쟁에 제3자로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는 EU(17건, 35%), 중국(16건, 33%)⁵⁾, 브라질(15건, 31%), 미국(14건, 29%), 대만과 호주 (13건, 27%) 등의 순이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관련 1건의 제소와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 관련 1건의 피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SPS협정 관련 분쟁에서 낮은 건수(총 2건)와 비중(4.1%)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WTO SPS 관련 분쟁에 중국은 제3자로서 16건의 분쟁에 참여하였고, 이는 EU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정부가 SPS 관련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SPS 통상분쟁에서 상대국을 제소한 건수는 없는 반면에 미국(3건), 캐나다(2건), 일본(1건)으

로부터 6건의 제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3자로서는 총 7건의 SPS 분쟁에 참여하였다.

3. SPS 협정 조항별 분쟁 현황

SPS 통상분쟁은 일반적으로 WTO SPS 협정문의 주요 조문(항)별 이행과 관련한 제소국과 피소국간의 입장과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에 SPS 통상분쟁을 SPS 협정문의 주요 조문(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피소된 대부분 국가는 SPS 협정문 제2조 “회원국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48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제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단, DS133⁶⁾은 예외). 그다음으로는 제5조 “위험평가 및 동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의 결정(47건)”과 관련하여 제소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단, DS134⁷⁾ 및 DS237⁸⁾ 예외). 이어서 제3조 “조화(27건)”, 제8조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26건)”, 제7조 “투명성(25건)” 등의 순으로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및 표 2-4 참조).

5) 중국은 홍콩까지 포함할 경우 EU와 같이 17건의 SPS분쟁에 제3자로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이다.

6) DS133: 슬로바키아의 스위스산 유제품 수입과 가축 운송 관련 분쟁이다.

7) DS134: EU의 인도산 쌀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분쟁이다.

8) DS237: 터키의 에카도르산 신선 과일에 대한 수입 절차관련 분쟁이다.

<표 2-3> SPS 협정 조항별 통상분쟁 현황(1995~2019)⁹⁾

조항		통상분쟁	건수
제1.1조	일반규정 (적용범위)	<u>DS447</u> , DS448	2
제2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DS3, DS5, <u>DS18</u> , DS20, DS21, <u>DS26</u> , DS41, <u>DS48</u> , <u>DS76</u> , DS96, DS100, DS134, <u>DS135</u> , DS137, DS144, DS205, DS256, DS270, DS271, DS279,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84</u> , <u>DS386</u> , <u>DS406</u> , <u>DS430</u> , DS525	28
제2.1조		DS284, <u>DS367</u> , <u>DS392</u> , DS506, DS524	5
제2.2조		DS203, <u>DS245</u> , DS270, DS284, DS287, <u>DS291</u> , <u>DS292</u> , <u>DS293</u> , DS297, <u>DS367</u> , DS389,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47</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32, DS540, DS589	24
제2.3조		DS203, DS237, <u>DS245</u> , DS270, DS284, DS287, <u>DS291</u> , <u>DS292</u> , <u>DS293</u> , DS297, <u>DS367</u> ,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47</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32, DS540, DS589	24
제3조	조화	<u>DS18</u> , <u>DS26</u> , <u>DS48</u> , DS96, DS100, <u>DS135</u> , DS137, DS144, DS203, DS205, DS270, DS271, DS279, <u>DS406</u> , DS525	15
제3.1조		DS270, DS297,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47</u> , DS448, <u>DS475</u> , <u>DS484</u> , DS506, DS524, DS589	12
제3.2조		<u>DS475</u> , DS506	2
제3.3조		DS287, <u>DS391</u> , <u>DS392</u> , <u>DS447</u> , DS448, <u>DS475</u> , DS506, DS589	8
제4조	동등성	<u>DS76</u> , DS100, DS137, DS144, DS270, DS271, <u>DS495</u>	7
제4.1조		DS287, DS540	2
제5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 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DS3, DS5, <u>DS18</u> , DS20, DS21, <u>DS26</u> , DS41, <u>DS48</u> , <u>DS76</u> , DS96, DS100, DS133, <u>DS135</u> , DS137, DS144, DS205, DS256, DS270, DS271, DS279,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84</u> , <u>DS386</u> , DS389, <u>DS406</u> , <u>DS430</u> , <u>DS484</u> , DS525	30
제5.1조		DS203, <u>DS245</u> , DS270, DS284, DS287,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67</u> , DS389,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47</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32, DS540, DS589	23
제5.2조		<u>DS245</u> , DS270, <u>DS291</u> , <u>DS292</u> , <u>DS293</u> , DS297, <u>DS367</u> , DS389, <u>DS392</u> , <u>DS430</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32, DS589	18
제5.3조		<u>DS245</u> , DS270, DS297, <u>DS367</u> , <u>DS392</u> , <u>DS475</u> , DS524, DS532, DS540	9
제5.4조		<u>DS392</u> , <u>DS447</u> , DS448, <u>DS475</u> , DS506, DS524, DS532, DS589	8

9) <표 2-3>은 김상현 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pp. 54-55을 참고하여 재정리했다.

(표 계속)

조항		통상분쟁	건수
제5.5조		<u>DS245</u> , <u>DS270</u> ,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67</u> ,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75</u> , <u>DS484</u> , <u>DS495</u> , <u>DS524</u> , <u>DS532</u> , <u>DS589</u>	15
제5.6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 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u>DS203</u> , <u>DS245</u> , <u>DS270</u> , <u>DS287</u> ,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297</u> , <u>DS367</u> ,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47</u> , <u>DS448</u> , <u>DS475</u> , <u>DS484</u> , <u>DS495</u> , <u>DS506</u> , <u>DS524</u> , <u>DS532</u> , <u>DS540</u> , <u>DS589</u>	22
제5.7조		<u>DS287</u> ,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75</u> , <u>DS495</u> , <u>DS506</u> , <u>DS524</u> , <u>DS589</u>	9
제5.8조		<u>DS495</u> , <u>DS524</u>	2
제6조		<u>DS137</u> , <u>DS144</u> , <u>DS256</u> , <u>DS270</u> , <u>DS271</u> , <u>DS430</u>	6
제6.1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용	<u>DS245</u> , <u>DS270</u> , <u>DS297</u> , <u>DS391</u> , <u>DS430</u> , <u>DS447</u> , <u>DS475</u> , <u>DS506</u> , <u>DS524</u>	9
제6.2조		<u>DS245</u> , <u>DS270</u> , <u>DS297</u> , <u>DS430</u> , <u>DS447</u> , <u>DS475</u> , <u>DS506</u> , <u>DS524</u>	8
제6.3조		<u>DS475</u> , <u>DS506</u>	2
제7조	투명성	<u>DS21</u> , <u>DS76</u> , <u>DS203</u> , <u>DS237</u> , <u>DS245</u> , <u>DS256</u> , <u>DS279</u> , <u>DS284</u> ,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297</u> , <u>DS384</u> , <u>DS386</u> , <u>DS389</u> , <u>DS406</u> , <u>DS430</u> , <u>DS448</u> , <u>DS475</u> , <u>DS495</u> , <u>DS506</u> , <u>DS524</u> , <u>DS525</u> , <u>DS532</u> , <u>DS589</u>	25
제8조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u>DS21</u> , <u>DS41</u> , <u>DS76</u> , <u>DS100</u> , <u>DS203</u> , <u>DS237</u> , <u>DS279</u> , <u>DS287</u> ,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67</u> , <u>DS389</u> , <u>DS391</u> , <u>DS392</u> , <u>DS447</u> , <u>DS448</u> , <u>DS475</u> , <u>DS484</u> , <u>DS495</u> , <u>DS506</u> , <u>DS524</u> , <u>DS525</u> , <u>DS532</u> , <u>DS540</u> , <u>DS589</u>	26
제10조	특별 및 차등 대우	<u>DS270</u> , <u>DS271</u> , <u>DS293</u>	3
제10.1조		<u>DS293</u> , <u>DS447</u> , <u>DS448</u>	3
제13조	이행	<u>DS144</u>	1
부속서 B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의 투명성	<u>DS144</u> , <u>DS205</u> , <u>DS237</u> , <u>DS245</u> , <u>DS256</u> , <u>DS284</u> ,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297</u> , <u>DS389</u> , <u>DS430</u> , <u>DS448</u> , <u>DS475</u> , <u>DS495</u> , <u>DS524</u> , <u>DS525</u> , <u>DS589</u>	18
부속서 B para. 1		<u>DS532</u>	1
부속서 C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	<u>DS144</u> , <u>DS237</u> , <u>DS287</u> ,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67</u> , <u>DS389</u> , <u>DS391</u> , <u>DS448</u> , <u>DS475</u> , <u>DS484</u> , <u>DS495</u> , <u>DS506</u> , <u>DS524</u> , <u>DS525</u> , <u>DS589</u> , <u>DS447</u>	18
부속서 C para. 1(a)		<u>DS532</u> , <u>DS540</u> , <u>DS589</u>	3
부속서 C para. 1(b)		<u>DS532</u> , <u>DS589</u>	2

주: 1) SPS 조항별 분쟁 현황은 제소국에 의해 인용된 SPS 조항 기반으로 정리된 것이다.

2) 진하게 밑줄 친 분쟁사례는 패널 및 상소보고서가 회람되거나 채택된 경우이다.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표 2-4> WTO SPS 협정 관련 피소국별 주요 분쟁 쟁점(1995~2019)

국가	일반 규정 (제1조)	기본권리 의무 (제2조)	조화 (제3조)	동등성 (제4조)	위험평가 (제5조)	지역화 (제6조)	투명성 (제7조)	방제검사 및 승인절차 (제8조)	특별 및 차등대우 (제10조)	이행 (제13조)	부속서B	부속서C
EU		9	4	1	8	1	4	4	1		4	4
미국	2	9	6	3	9	2	4	5	2	1	2	4
한국		6	1	1	6	1	1	3			1	2
호주		6	4	3	6	2	1	3	2			2
인도		3	3		3	1	2	1			1	
러시아		2	1		2	1	2	2			2	2
멕시코		2	1		2		2	1			1	
인도네시아		2	2		2	1	1	2				2
일본		2		1	2	1	2	1			1	
터키		2			1	1	2	1			2	1
슬로바키아					1							
우크라이나		1	1		1		1	1			1	1
이집트		1	1		1						1	
중국		1	1		1		1	1			1	1
코스타리카		1	1		1	1	1	1			1	1
크로아티아		1	1		1	1	1				1	1
합계	2	48	27	9	47	13	25	26	5	1	19	21

주: 해당 통계는 각 분쟁의 SPS협정의 각 조항별 분쟁 건수이며, 피소국 기준으로 정리했다.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4. SPS 분야별 분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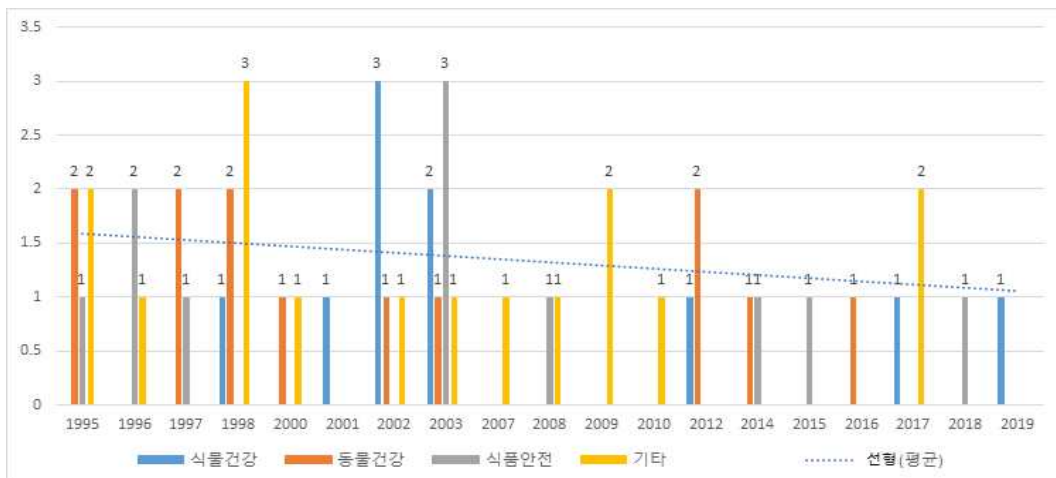
WTO/SPS 위원회의 분류에 따르면 SPS 협정 관련 분쟁은 크게 식품안전(Food Safety), 동물건강(Animal Health), 식물건강(Plant Health)과 기타(Other Concerns)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건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전체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주요 분야별 차지 비중은 기타(32%), 동물건강(26%), 식품안전(22%), 식물건강(20%)의 순이었다. 하지만 SPS 관련 통상분쟁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회원국 간 특정무역현안(ST

C)¹⁰⁾ 분야별 제기 비중은 동물건강(36%), 식품안전(33%), 식물건강(24%), 기타(7%)의 순이었다(그림 2-2, 2-3 참조).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통보한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해 당사국은 특정무역현안 제기를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요청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인

패널 구성 요청 등의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 않고, 이해 당국 간의 설명과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제 SPS 통상분쟁과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분야별 제기 건수와 비중에 차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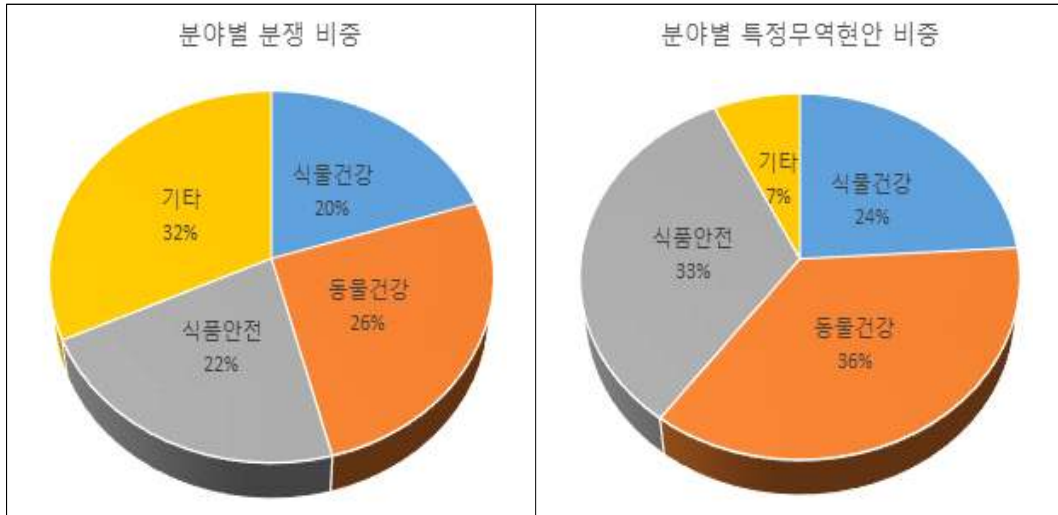
<그림 2-2> WTO SPS 협정 관련 분야별 분쟁 추세(1995~2019)



주: DS144는 동물건강과 식물건강이 동시에 쟁점으로 제기되어 여기서는 각 항목에 모두 표시
 자료: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출처: <http://spsims.wto.org/en/OtherDocuments/Search> 최종 검색일: 2020. 7. 11.)

10)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이란 WTO SPS 위원회에 통보된 회원국의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이 자국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경우,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조치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상대국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림 2-3> WTO SPS DSB 분쟁과 특정무역현안(STC)에 제기된 분야별 비중 (1995~2019)



주: 1) 분쟁의 주제키워드 또는 관련 참고문서에서 식품안전, 식물건강 또는 동물건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본 연구에서는 기타로 분류했다.

2) DS144는 동물건강과 식물건강이 동시에 쟁점으로 제기되어 여기서는 각 항목에 모두 표시

자료: WTO SPS 분쟁자료는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특정무역현안 자료는 G/SPS/GEN/204/Rev.20 참고

III. 중국의 SPS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1. 중국 관련 전체 분쟁사례(제소, 피소)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최근 (2020년 7월)까지 중국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공식 회부된 통상

분쟁은 총 65건인데, 그 중 21건은 중국이 제소한 소송이며, 44건은 중국이 피소된 소송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생검역조치 관련 분쟁 건수는 제소 및 피소 각각 1건씩이다(표 3-1 및 표 3-2 참조). 이는 농산물 무역대국이자 선진국인 미국(제소 11건, 피소 9건) 및 EU(제소 5건, 피소 9건)의 SPS 협정 관련 분쟁소송보다 훨씬 적은 제소 및 피소 건수이다.

<표 3-1> 중국이 제소한 통상분쟁 현황

제소국	모든 협정분야 전체	농업협정 관련	SPS 협정 관련
중국	DS252, DS368, DS379, DS392, DS397, DS399, DS405, DS422, DS437, DS449, DS452, DS471, DS492, DS515, DS516, DS543, DS544, DS562, DS563, DS565, DS587	DS392	DS392
중국차지 비중	3.5%(21/593)	1.2%(1/84)	2%(1/49)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psims.wto.org/en/OtherDocuments/Search> 최종 검색일: 2020. 7. 11.)

<표 3-2> 중국이 피소된 통상분쟁 현황

피소국	모든 협정분야 전체	농업협정 관련	SPS 협정 관련
중국	DS309, DS339, DS340, DS342, DS358, DS359, DS362, DS363, DS372, DS373, DS378, DS387, DS388, DS390, DS394, DS395, DS398, DS407, DS413, DS414, DS419, DS425, DS427, DS431, DS432, DS433, DS440, DS450, DS451, DS454, DS460, DS483, DS489, DS501, DS508, DS509, DS511, DS517, DS519, DS542, DS549, DS558, DS568, DS589	DS390, DS388, DS387, DS568, DS511, DS451	DS589
중국차지 비중	7.4%(44/593)	7.1%(6/84)	2%(1/49)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psims.wto.org/en/OtherDocuments/Search> 최종 검색일: 2020. 7. 11.)

하지만 중국은 SPS분쟁의 제3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에서 발생한 전체 49건의 SPS 분쟁에서 중국은 총 16건의 분쟁에 제3자로 참여하였다(표 3-3 참조). 특히 2008년부터 중국의 농산물 무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3자로서 SPS협정과 관련

된 분쟁에 참여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예컨대 2008년 이전 발생한 총 31건의 SPS 분쟁에 중국은 오직 6건에만 제3자로서 참여하였으나, 2008년 이후 발생한 총 16건의 SPS 분쟁에서는 10건에 제3자로 참여하였다.

<표 3-3> 중국이 제3자로서 참여한 통상분쟁 현황

제3자	전체 분야	농업협정 관련	SPS협정 관련
중국	DS108, DS174, DS207, DS212, DS243, DS245, DS248, DS249, DS251, DS253, DS254, DS257, DS258, DS264, DS265, DS266, DS267, DS268, DS269, DS270, DS273, DS276, DS277, DS280, DS281, DS282, DS283, DS285, DS286, DS287, DS290, DS291, DS292, DS293, DS294, DS295, DS296, DS299, DS301, DS302, DS308, DS312,	DS108, DS207, DS245, DS265, DS266, DS267, DS283, DS291, DS292, DS293, DS323, DS334,	DS245, DS270, DS287, DS291, DS292, DS293, DS384, DS386, DS389, DS391, DS430, DS447,

제3자	전체 분야	농업협정 관련	SPS협정 관련
	DS315, DS316, DS317, DS320, DS321, DS322, DS323, DS327, DS331, DS332, DS334, DS335, DS336, DS337, DS341, DS343, DS344, DS345, DS347, DS350, DS353, DS366, DS369, DS371, DS375, DS376, DS377, DS381, DS384, DS386, DS389, DS391, DS396, DS400, DS401, DS402, DS403, DS404, DS412, DS415, DS416, DS417, DS418, DS420, DS421, DS423, DS426, DS429, DS430, DS434, DS435, DS436, DS438, DS441, DS444, DS445, DS447, DS453, DS455, DS456, DS457, DS458, DS461, DS462, DS464, DS467, DS469, DS472, DS473, DS474, DS475, DS476, DS477, DS478, DS479, DS480, DS482, DS484, DS485, DS486, DS487, DS488, DS490, DS491, DS493, DS494, DS495, DS496, DS497, DS499, DS502, DS504, DS505, DS510, DS512, DS513, DS518, DS521, DS522, DS523, DS524, DS526, DS529, DS531, DS533, DS534, DS536, DS537, DS538, DS539, DS541, DS545, DS546, DS547, DS548, DS550, DS551, DS552, DS553, DS554, DS556, DS557, DS559, DS560, DS561, DS564, DS566, DS567, DS573, DS576, DS577, DS578, DS579, DS580, DS581, DS583, DS585	DS341, DS389, DS400, DS401, DS438, DS455, DS457, DS477, DS478, DS484, DS579, DS580, DS581	DS475, DS484, DS495, DS524
중국의 비중	30.2%(179/593)	29.8%(25/84)	32.7%(16/49)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psims.wto.org/en/OtherDocuments/Search> 최종 검색일: 2020. 7. 11.)

아래에서는 SPS 분쟁 관련 중국이 미국에 제소한 소송과 캐나다에 의해 피소된 소송을 중심으로 각 소송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2.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DS392)¹¹⁾

가. 제소배경

미국은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근거로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우선 2007년 WTO SPS 위원회에 특정무역 현안(STC257, 부록 1 참조)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견을 제기하였다. 그 후 중국의 강력한 문제 제기 속에 양자 간 논의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에 난항을 겪자 중국은 2009년 4월 정식으로 WTO DSB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는 공식적인 통상분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가금

11) Penal Report, United States-Certain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From China, WT/DS392/R, 29 September 2010.

류 수입 관련 갈등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초에 중국과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하자 양국은 서로 가금류 수입을 중단했¹²⁾다. 그 후 양국은 협의를 통해 2004년 4월 가금류 무역 문제를 상호 순차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먼저 미국

산 가금류 수입 금지를 해제하였으나 미국은 자국산 가금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에도 농식품 안전과 자국민 건강보호 차원의 '관련 법률 절차 이행'이라는 이유로 중국산 가금류의 대미 수출을 계속 금지해 왔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중국의 대미 가금류 수출입 통계 (1999~2020)



주: 2020년도의 자료는 5월까지이며, 2020년 2월 중국은 2015년부터 미국의 조류독감(AI) 발생을 근거로 취해오던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출처: <https://www.kita.net/> 최종 검색일: 2020. 7. 11.)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미국산 가금류 수입재개 이후 미국산 가금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중국의 전체 가금류 수입(79만톤)의 73.4%(58만톤)

가량이 미국산이었다. 하지만 중국산 가금류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2004년 이후 계속 불허되었다. 미국산 가금류(특히 닭고기) 제품은 높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으로 중국

12) KIEP 북경사무소, “중국 WTO 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14집, 제4호, 2012.

시장 점유율을 높여 온 반면에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 제품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문제가 아직 미해결되었다며 당초 합의와 달리 지속적으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해 온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불평등한 양국 간 가금류 무역이 5년(2004~2009년)간 지속되자 양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은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종합세출법안 제727조(이하 “제727조”)¹³⁾를 통해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위한 규정 제정과 시행을 위해 재정자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의 공식적인 WTO 분쟁제소에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 조항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와 자국민의 건강 보호의 목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은 이 조항이 중국산 가금류 제품 수입금지에 대한 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고, 특히 다른 회원국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만 불공정한 차별적 대우임을 주장하며 2009년 4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한 것이다.

나. 소송쟁점

본 소송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보호주의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식품안전과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2010년 9월 WTO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조치는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되며, 중국경제에 손해를 미쳤다고 밝히며, 특히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다른 WTO 회원국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만 해당 조치를 시행한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기에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아래는 패널분쟁 과정에서 인용된 주요 조항별 판정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패널은 미국의 종합세출법안 제727조가 회원국(미국)의 인간과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SPS 협정의 부속서

13) 2009년 3월 미국 종합세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Act) 제727조는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사용할 수 없음은 명문화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ne of the funds made available in this Act maybe used to establish or implement a rule allowing poultry products to b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tates, 2009).

A(1)(b)¹⁴⁾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적용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SPS 협정문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1) 제727조는 SPS협정의 제5.1조(국제 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 고려), 제5.2조(위험평가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및 관련 검사방법 적용) 및 제2.2조(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 필요)를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특히 제5.2조에 명시된 과학적 위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았고,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제2.2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2) 패널은 제727조가 SPS 협정 제5.5조(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 제2.3조(차별 금지 및 무역 위장적 금지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한 제727조는 중국산 가금류에 대해서만 부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다른 WTO 회원국의 가금류 제품과 차별적 적용을 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제727조는 SPS 협정 제8조(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으며, 미국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¹⁵⁾ 승인절차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종합세출법안의 공동설명문(Joint Explanatory Statement, JES)¹⁶⁾에서 제727조에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정했다.

둘째, 패널은 제727조가 가금류 제품의 국제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지었다. 특히 GATT1994 협정의 제1.1조(최혜국 대우), 제11.1조(수량제한금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패널은 제727조가 중국산 가금류 제품을 다른 회원국보다 덜 유리한 방식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패널은 제727조가 SPS 협정의 제5.6조(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을 거부했다.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DSU 제11조에 따른 패널의 역

14) 부속서 A(1)(b):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보호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15)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FSIS): 미 농무부(USDA) 산하 기관으로 육류, 가금류 및 가공 계란제품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검사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16) 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9; Congressional Record Vol. 155, No. 31, p. H1679, February 23, 2009 <<https://www.congress.gov/congressional-record/2009/02/23/house-section/article/H1653-6>, 2020.8.9. 검색>

할을 넘는 범위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 소송경과

2009년 3월 미국의 종합세출법안 시행 이후 두 달이 경과한 5월에 미 농무부(USDA)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중국 측에 2006년 이후 시행한 식품안전 관련 법률과 조례 및 검사와 통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다시 양자간 협의개최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WTO에 제소했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2009년 6월 공식적

으로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였다. 아래는 미-중간 가금류 수입관련 분쟁경과이다:

- 2009년 4월 17일: 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 제소
- 2009년 6월 23일: 중국측 패널 요청
- 2009년 7월 31일: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
- 2009년 9월 23일: 패널위원 구성
- 2010년 9월 29일: 패널 최종보고서 회람
- 2010년 10월 25일: 패널 보고서 정식 통과

<표 3-4> 중국이 제소한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 관련 분쟁(DS392) 요약

분쟁사안	DS392: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치
피소국-제소국	미국-중국
제3국	브라질, EC, 과테말라, 한국, 대만, 터키
인용 된 협정 및 조항 (협의 요청에서 인용)	농업협정: 제4.2조 GATT 1994: 제I:1조, 제XI:1조 SPS 협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8조
인용 된 협정 및 조항 (패널 요청에서 인용)	GATT 1994: 제I:1조, 제XI:1조 농업협정: 제4.2조 SPS 협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8조
분쟁 제소 날짜	2009년 4월 17일
패널 요청 날짜	2009년 6월 23일
패널 설치 날짜	2009년 7월 31일
패널위원 구성 날짜	2009년 9월 23일
패널 보고서 회람 날짜	2010년 9월 29일 (2010년 10월 25일 채택)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92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본 소송은 패널 설치부터 분쟁 해결까지 약 14개월 소요되었는데, 이는 WTO 분쟁 해결기구의 평균 소요 시간과 비슷하다¹⁷⁾. 중국은 본 분쟁에서 승소하였으며¹⁸⁾, 미국은 제727 조항을 2010년 종합세출법안에서 제743조¹⁹⁾항으로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마무리되었다.

3.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²⁰⁾ 수입제한 조치(DS589)²¹⁾

가. 피소배경

전 세계에서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의 최대 수입국이다. 2002년부터 중국은 카놀라 종자 총수입액의 약 90% 이상을 캐나다로부터 수입해 왔으며, 카놀라 종자는 2012년부터 중국의 캐나다산 전체 수입

품(수입액 기준)의 1위~5위내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이다(표 3-5 참조). 즉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의 최대 수입시장으로 2018년 캐나다의 전 세계 카놀라 종자 총 수출액의 40%를 수입했다²²⁾.

그런데 2019년 3월 중국은 캐나다산 수입 카놀라종자에서 검역상 유해물질(잡초 종자)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1일과 2019년 3월 26일 각각 캐나다의 대표적 수출업체인 리차드슨(Richardson)과 비테라(Viterra)로 부터의 카놀라 종자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다른 캐나다 수출회사들의 경우 중국에 카놀라 종자를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였지만 기존 보다 강화된 검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수입제한 조치를 받은 2개 회사에 비해 수출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들이었다.

17) Dispute Brochure 20-Year Edition, 2015 참고.

18) 패널은 미국이 SPS협정으로 포함한 몇 가지 국제 조항에 위반하였다고 판결했지만 제727조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제727조를 SPS 협정 및 GATT 1994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미국에 요청할 것을 권장하지 않았다.

19) 사실상 제743조는 패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수정한 것이며, 제727조에 대한 조건부 수정이라 중국은 여전히 중국산 가금류에 차별적 요건을 설정했다는 불만을 표시한 바 있지만, 더 이상의 공식적인 분쟁 제기는 없었다.

20) 해당 분쟁의 협의 요청서에서 ‘종자’라는 용어는 가공 또는 소비용으로 재배용이 아닌 종자를 지칭한다.

21)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anada, China-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anola Seed From Canada, WT/DS589/1, 12 September 2019.

22) canolacouncil.org, “Challenges persist for canola seed exports to China”, March 21, 2019, <<https://www.canolacouncil.org/china-update/>, 2020.8.9 검색>

<표 3-5>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현황

단위: 천불

연도	중국의 카놀라 종자 총 수입액(A)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수입액(B)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 비중(C)	캐나다산 수입품목 중 순위
2002	66,895	10,733	16.0%	12
2003	18,224	18,224	100.0%	17
2004	119,737	118,882	99.3%	14
2005	71,320	59,896	84.0%	18
2006	206,777	206,777	100.0%	10
2007	349,921	349,706	99.9%	9
2008	754,036	740,825	98.2%	8
2009	1,385,180	1,361,341	98.3%	1
2010	777,618	777,618	100.0%	6
2011	797,701	797,701	100.0%	6
2012	1,954,100	1,954,100	100.0%	3
2013	2,419,032	1,843,034	76.2%	3
2014	2,781,187	2,480,064	89.2%	1
2015	2,005,955	1,769,711	88.2%	2
2016	1,467,646	1,439,300	98.1%	2
2017	2,099,103	2,073,273	98.8%	1
2018	2,119,336	2,106,727	99.4%	3
2019	1,132,015	1,068,542	94.4%	4
2020년 5월까지	519,718	383,062	73.7%	5

주: 카놀라 종자의 통계자료는 HS120510기준으로 추출 및 정리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출처: <https://www.kita.net/> 최종 검색일: 2020. 7. 11.)

이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검역상 불순물 포함 문제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양자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카놀라 종자의 정상수출을 위해 여러 차례 중국과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캐나다는 더 이상 양자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2019년 9월 9일에 중국을 WTO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하였다.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의 수입금지가 명분적으로는 주요 수출업체 제품에 서의 불순물 검출이라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지만 캐나다측은 중국 당국의 수입제한 조치의 배경에는 국제정치적인 복잡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2018년 12월 중국 이동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의 명완저우(孟晚舟) 부회장이 미국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이후 중국이 캐나다를 표적으로 삼은 경제보복 조치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이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곧 바로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하고, 곧 이어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캐나다 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사태가 카놀라 종자 수입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으로 비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나. 소송쟁점

본 소송에 대해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중국 측의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 중단조

치의 이유로 내세운 근거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산 카놀라의 수입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불순물 문제는 과학적 증거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 가능한 문제이나 중국 당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캐나다를 표적으로 삼은 과도한 보복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의 수입 중단조치는 정상적인 검역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 예방 조치로 합리적이며, 중국 법규와 국제 관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9월 캐나다 측이 WTO 분쟁해결 기구(DSB)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아직까지 패널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지만, 캐나다가 중국의 자국산 카놀라 종자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국제무역규범 위반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주요 조항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캐나다는 중국의 카놀라종자 수입 조치가 WTO SPS 협정 관련 16개 조항, GATT1994 관련 5개 조항, TFA(무역원활화) 협정²³⁾ 관련 3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소하였다. 아래는 캐나다 측이 주요 국제협정을 인용하여 중국 측이 위반하고

23)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은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7년 2월 발효되었다. 무역원활화협정(TFA)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간 정보교환, 대개도국 우대조항 등을 규정하여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간 교역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협정이다. 특히 WTO 무역원활화 협정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해 이행능력에 따라 조항별 이행의무 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 규정을 도입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있다고 인용하고 있는 주요 협정별 근거조항들이다.

첫째, 캐나다는 SPS협정 측면에서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에 대한 조치는 다음 조항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제2.2조(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의무);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는 과학적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있으며,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제2.3조(부당한 차별금지 및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적 제한 금지 의무): 동일한 혹은 유사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동 조치가 임의적으로 또는 정당하지 못하게 특정 회원국(캐나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었고,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3) 제3.1조(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국제 기준, 지침, 권고에 기초): 중국의 조치는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특히 식물검역관련 핵심 국제기구인 IPPC²⁴⁾의 국제 식물위생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ments, ISPMs)에 관한 국제지침에 근거하지 않았다.

(4) 제3.3조(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을 위한 조치): 중국의 조치는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 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또한 동 조치가 중국이 추구하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제5.1조(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 고려) 및 제 5.2조(위험평가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및 관련 검사방법 적용): 중국의 조치는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방법 또는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고, 위험평가에 있어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

(6) 제5.4조(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중국이 적절한 보호 수준을 결정할 때 부정적인 무역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고려하지 않았다.

(7) 제5.5조(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자의적 조치 방지): 중국의 조치는 임의적이고 부당하게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 대해 차별화

24)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은 1991년 4월 3일 식물 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산하 기구이다.

했다.

(8) 제5.6조(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 중국의 조치는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었다.

(9) 제5.7조(합리적인 기간 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 중국의 조치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입수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잠정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10) 제7조(투명성): 중국은 해당 조치를 공표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특히 중국이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원칙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11) 제8조(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에 대한 정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검역검사에 사용되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았으며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의 무역 활동을 저해했다.

둘째, 캐나다는 또한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중단 조치는 GATT1994 협정상 아래 조항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 제1.1조(최혜국대우): 중국이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과 관련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의무보다 불리하지 않을 최혜국대우의무(MFN²⁵))를 위반하고 있다.

(2) 제3.4조(내국민대우): 중국이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에 대해서 중국이 '유사'제품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특혜를 주지 않았다.

(3) 제10.3(a)조(공평하고 합리적 방식으로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중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와 관련된 법률, 규정, 결정 및 판결을 균일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4) 제1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중국의 조치는 GATT 11조 수량제한금지 위반으로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캐나다는 무역원활화협정(TFA) 관련하여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 제한 조치는 주로 다음 조항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5) MFN: Most favored nation.

(1) 제1.1조(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 중국은 캐나다와 무역업자들이 조치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지 않았다.

(2) 제5.1조(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식품, 사료에 대한 국경 통제 또는 검사 수준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통지와

지침을 관련 당국에서 발표했지만, 이는 위험평가에 근거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종료 또는 중단되지 않았다.

(3) 제7.4.2조 및 제7.4.4조(상품의 반출 및 통관): 중국은 위험관리의 설계 및 시행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위반했으며, 또한 동조치는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에 기반한 적절한 조치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표 3-6> 중국이 피소된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 관련 분쟁(DS589) 요약

분쟁사안	DS589: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 금지조치
피소국-제소국	중국-캐나다
제3자	-
인용된 협정 및 조항 (협의 요청에서 인용)	SPS 협정: 제 2.2 조, 제 2.3 조, 제 3.1 조, 제 3.3 조, 제 5.1 조, 제 5.2 조, 제 5.4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7 조, 제 7 조, 제 8 조, 부속서 B, 부속서 C, 부속서 C para. 1(a), 부속서 C para. 1(b) GATT 1994: 제 1.1 조, 제 3.4 조, 제 10.3(a)조, 제 11.1 조, 제 23:1(b)조 TFA 협정: 제 1.1 조, 제 5.1 조, 제 7.4 조
분쟁제소 날짜	2019 년 9 월 9 일
양국간 WTO 공식협의 날짜	2019 년 10 월 28 일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9_e.htm 최종 검색일: 2020. 8. 9.)

다. 소송경과

2019년 1월 이후 중국이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검역 유해 성분(잡초종자) 검출을 근거로 캐나다 주요 수출기업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후 양국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캐나다는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 중단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중국 측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양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검역상 이유로

기 보다는 사실상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구금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이 사안을 2019년 9월 9일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했으며, 2019년 10월 28일 처음으로 WTO 차원에서 양국간 제네바에서 협의가 있었다(표 3-6 참조). 하지만 그 이후 공식적인 WTO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캐나다 측의 패널설치 요청 등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외신보도²⁶⁾와 캐나다 카놀라 협회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2020년 3월 양국 간 이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의가 있었으나 아직도 캐나다의 핵심적 카놀라종자 최대 수출기업인 리차드슨(Richardson)과 비테라(Viterra)의 중국 수출허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에 대한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출은 평년대비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더 이상 WTO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는 이유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상소기구 위원 선임에 실패하는 등 제 역할을 수행 할 수 없고, 특히 캐나다 카놀라 생산자 협회는 이 문제가 오랜 시일이 걸리는 WTO 분쟁해결 기구를 거치지 않고 양국 간 원만한 해결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카놀라 종자를 중국에 정상적으로 수출

하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중국 양측 정부는 모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따라서 이 사안은 양국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SPS 관련 분쟁의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 SPS 관련 정책에 주는 교훈과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난 20년간 총 65건의 WTO 분쟁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 2건이 SPS 관련 분쟁이다. 이렇게 2건의 중국의 SPS 분쟁 중 1건은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한 건이며, 다른 한 건은 중국이 캐나다로부터 피소된 사안이다. 먼저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DS392)는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위생검역조치와 관련된 첫 제소건이다. 특히 중국이 세계 최강국

26) "UPDATE: China, Canada discuss continuation of reduced canola seed trade" By Reuters News Service, March 31, 2020 <<https://www.tridge.com/news/update-china-canada-discuss-continuation-of-reduce> 2020.8.9 검색>

인 미국을 상대로 자국의 검역주권과 농업 통상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승소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중국의 축산환경과 검역과학 여건²⁷⁾에서 자국에 불리할 수도 있는 가금류 인플루엔자(AI) 관련하여 미국 법제의 불공정한 대우에 초점을 두고,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SPS 협정문과 연계한 적극적 공격 전략을 통해 승소함으로써 통상분쟁에서 중국의 새로워진 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물론 樂信杰, 陳怡晨(2013)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DS392)는 종료되었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안전을 명분으로하는 보호주의적 조치 도입과 소비자 건강 및 안전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반의 요구사항은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이 승소했다고 해서 중국산 가금류 제품이 순조롭게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미국은 여전히 SPS 협정 제3.3조에 따라 국제 표준보다 더 높은 표준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가금류 제품의 대미 수출에 계속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郭麗, 李曉玲(2012)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DS392)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첫 농산물관련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농산물 수출과 국내 지원정책 수립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우선 이 분쟁은 중국산 농식품 수출에 있어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역상대국에서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문제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중국 정부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WTO 패널 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차별하는 종합세출법안 제727 조항을 수정하도록 한 것이 바로 중국의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전략적 제소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유효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자국의 농식품 수출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대외적으로는 자국산 농식품에 불공정한 대우를 취하는 국가와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농식품이 생산 및 유통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 제한에 대한 분쟁(DS589)은 중국이 WTO

27) Wen-yi, M. U. "Improvemen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ystem in China—SPS Agreement to Perspective", Standard Science, 2010.

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SPS 관련하여 피소된 것이다. 현재 WTO 분쟁해결기구에 캐나다가 분쟁을 제기한 이후 아직 공식적인 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캐나다 측은 이 사안이 검역상 양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중국의 다른 조치에 대한 불만을 대신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사실 2018년 12월 중국 화웨이(Huawei)부회장이자 CFO(최고재무책임자)인 멩완저우를 캐나다 정부가 체포한 뒤로 양국관계는 악화되었고, 중국은 바로 캐나다의 주요 수출 농산물인 카놀라 종자의 수입을 제한한 것이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자국산 카놀라종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시장 진입축소에 대한 자국 생산 농가의 우려와 압력을 수용하여 더 이상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 절차 진행을 요청하지 않고,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세계대국으로서 “무역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과 같이 국제협정에 명백히 위반되면서 자국의 통상이익을 침해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간 대결구도를 형

성하여 세계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과 같이 수세적인 경우에는 중국이 가지는 높은 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비판과 위상 실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관련 분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찾아낸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과 정책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우선 우리나라는 SPS 관련 무역분쟁에서 피소를 많이 받는 반면에 제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발생한 전세계 SPS관련 분쟁 49건의 12%에 해당하는 6건에 대해 피소를 당했는데, 이는 EU(9건)와 미국(9건)을 이어서 호주와 함께 3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SPS 관련 피소건수(6건)는 한국관련 전체 무역분쟁 피소건수(19건)의 32%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제기한 전체 21건의 WTO 분쟁 제소 건에서 SPS 관련 제소 건수는 전무하다. 이것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써 적극적인 국내 위생검역조치 도입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농산물 수출 통상이익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

라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위생검역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중국과 같이 자국의 통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 체제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SPS 분쟁에서 관심이 있는 회원국은 제3자로 참여하여 협의에 참가하고,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달리 제3자로 참여하는 빈도가 낮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WTO 체제에서 발생한 SPS분쟁에서 중국(16건)은 EU(17건) 다음으로 제3자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3자로 7건의 SPS관련 분쟁에 참여하여 전체 제3자 참여국 중 16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향후 SPS 관련 무역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간에 발생하는 위생검역조치 관련 분쟁에 제3자로 적극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PS 관련 무역분쟁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많은 국가들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적 제도나 정책이 확산추세에 있음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입을 둘러싼 SPS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제 마련이 요청된다. 특히 1995년 WTO 출범 이후 발생한 무역 분쟁의 20% 이상이 농식품 관련 SPS 혹은 TBT 관련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주요국들은 자국 국민과 동식물 위생 및 건강을 위해 농식품 관련 SPS/TBT 조치의 도입과 운영상황을 통보하고 있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SPS/TBT 조치에 대해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특정무역현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SPS/TBT 조치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제 구축을 통해 농업통상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위생검역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무역 분쟁은 해당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주의를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국제기구의 지침이나 표준과의 조화(harmonization), 그리고 조치의 공표와 시행 등이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농축산물 검역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위생검역조치와 관련한

무역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시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미국, 호주, 뉴질
 랜드, 캐나다, EU, 칠레, 중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 이행 심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위생검역조치로 인해 상대국의 농
 산물 수출 감소시, 이해 당사국은 SPS 국
 제규범 준수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공세적
 으로 우리에게 통상현안을 제기할 가능성
 이 크다.

전통적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
 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서 위
 생검역조치에 대한 통상현안 문제 발생은
 대내적으로도 농업 관련 SPS 관련 기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위생검
 역조치 시행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근거와
 통상 규범적 대응 논리를 효과적으로 준비

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SPS 협정의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인
 위험평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증진시키
 면서 외래 질병 및 병해충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국제 SPS 협상분야의 조직과 인
 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 전문가가 적재
 적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
 선이 필요하다. SPS 관련 무역분쟁 대비
 대응체계 강화는 우리나라 수출 가능 농산
 물의 해외 시장개척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교역 상대국의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공세적 대응 방안으로도 효과적일 것
 이다. SPS 관련 통상 대응 능력 강화는 또
 한 사전적으로 WTO 혹은 FTA 분쟁해결
 절차로 회부되기 전에 SPS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논문

KIEP 북경사무소, “중국 WTO 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1집, 제4호, 2012.

김상현 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전정기.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263-286. 2015.

2. 외국논문

郭雳, 李晓玲. 「WTO争端裁决对我国农业支持政策的影响分析」, 南京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12(2), 2012.

栾信杰, 陈怡晨. 「美国——影响中国禽肉进口的某些措施」争端(DS392)研究. 国际商务研究, 34(190). 2013.

Wen-yi, M. U. “Improvemen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ystem in China—SPS Agreement to Perspective”, Standard Science, 2010.

3. 온라인자료

WTO. 1994년 GATT 협정문(국문본). 외교부, 2001.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외교부, 2001.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2017.

WTO. Dispute Brochure 20-Year Edition. 2015.

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9; Congressional Record Vol. 155, No. 31, p. H1679, February 23, 2009.

Penal Report, United States-Certain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From China, WT/DS392/R, 29 September 2010.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anada, China-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anola Seed From Canada, WT/DS589/1, 12 September 2019.

[국문초록]

중국의 WTO SPS 분쟁 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중국의 농산물 교역은 2018년 기준 2,780억 달러로 전 세계 2위의 농산물 무역대국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1년 166.3억 달러에서 2018년 827.9억 달러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고, 수입은 2001년 210.3억 달러에서 2018년 1,951.7억 달러로 연평균 15.5%씩 증가하면서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 추세는 불가피하게 향후 농산물 무역과 크게 연관되는 SPS관련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WTO 가입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2건의 SPS 관련 소송을 경험하였는 바, 그 중 하나는 중국산 가금류 수입 관련 미국에 대한 1건의 제소와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 관련 1건의 피소가 있다. 하지만 WTO SPS 관련 분쟁에 중국은 제3자로서 16건의 분쟁에 참여하였고, 이는 EU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정부가 SPS 관련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SPS 관련 분쟁의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 SPS 관련 정책에 주는 교훈과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DS392)는 중국이 2009년 미국을 상대로 자국의 검역주권과 농업통상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건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승소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중국의 축산환경과 검역과학 여건에서 자국에 불리할 수도 있는 가금류 인플루엔자(AI) 관련하여 미국 법제의 불공정한 대우에 초점을 두고,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SPS 협정문과 연계한 적극적 공격 전략을 통해 승소함으로써 통상분쟁에서 중국의 새로워진 위상을 발견 할 수 있다²⁸⁾.

28) 전정기,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263-286. 2015.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에 대한 분쟁(DS589)은 2019년 9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캐나다가 분쟁을 제기한 이후 아직 공식적인 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캐나다는 이 사안이 검역상 양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Huawei) 부회장인 멩완저우를 체포한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라 보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자국산 카놀라 종자 전체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청하지 않고,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WTO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세계대국으로서 “무역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과 같이 국제협정에 명백히 위반되면서 자국의 통상 이익을 침해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간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세계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과 같이 수세적인 경우에는 중국이 가지는 높은 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비판과 위상 실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SPS 관련 무역분쟁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많은 국가들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을 둘러싼 SPS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서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통상현안 문제 발생은 대내적으로도 농업 관련 SPS 관련 기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위생검역조치 시행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근거와 통상 규범적 대응 논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농산물 무역, 중국

[Abstract]

An Analysis of China's WTO SPS Disputes and Policy Implications

Jeongbin Im · Yinhua Quan

In 2018, China's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reached \$278 billion, becoming the world's second-largest agricultural trader. From 2001 to 2018, China's agricultural exports increased from \$16.6 billion to \$82.8 billion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0.2%, while imports increased from \$21.3 billion to \$195.17 billion during the same periods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5.5%. Thus, China has now emerged as the world's largest net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This huge growing trend in China's agricultural trade inevitably raises the possibility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disputes which is largely related to agricultural trade. There have been two official SPS-related disputes so far since China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 2011. One is to complain to the WTO about certain measures taken by the U.S. which affected the import of Chinese poultry products. The other is that China has been accused of taking measures regarding the import of Canadian canola seeds. Although the number of official SPS disputes involving China is not high, Chin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16 cases of WTO SPS disputes as a third party, which is the second-highest after the EU. This impli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pay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SPS-related issu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status of SPS disputes since the WTO system was established in 1995, and especially analyze the SPS disputes involving China. Based on these analyses results, we want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SPS disputes as well as the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Korea's SPS-related policies.

First of all, the dispute over the U.S. ban on Chinese poultry imports (DS392) was officially filed by China against the U.S. in 2009 to protect its quarantine sovereignty and agricultural export interest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aspect that raising and winning the case in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poultry imports by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y. In particular,

with winning the case through active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China's new status in trade disputes has been found in this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China challenged the U.S. legal system to the "unfair treatment" of U.S. legislation in relation to Avian Influenza (AI) and won in the end through making effective use of the articles from the SPS Agreement in the procedures of WTO dispute settlement.

The dispute over China's import restriction on Canadian canola seeds(DS589) has not to be set up an official panel since Canada has filed a complaint at the WTO's dispute settlement body in September 2019. Canada basically sees the issue as China's retaliation for the Canadian government's arrest of Huawei Vice Chairman Meng Wanzhou, rather than a quarantine issue that is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to resolve. For the momen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Chinese market,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40% of the total exports of Canadian canola seeds, the Canadian government no longer officially requests the WTO to proceed wit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wants to find a solution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In view of these two SPS disputes of China, it is assessed that China is basically utilizing both justification and practicality in WTO trade disputes under the principle of "not wanting but not afraid of trade wars." as a world power. First of all, China is actively using a strategy to form a confrontation between protectionism and free trade policies in favor of global public opinion by raising objec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ase of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U.S. restrictions on imports of Chinese poultry. Also, in case of restrictions on the import of Canadian canola seeds for quarantine reasons, China is taking advantage of its strong purchasing power to put pressure on the Canadian government. while making efforts to prevent public criticism and status decline from international society.

It is expected that SPS-related disputes will b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uture due to the spread of protectionism by many countries following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launch of U.S.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and the recent outbreak of the global Covid-19.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SPS disputes over Korea's agricultural trade are also expected to increase, so, an effective and efficient coping mechanism needs to be prepared In Korea's trade

structure, which traditionally exports manufactured goods and imports agricultural products, the trade disputes caused by SPS measures will pose a huge burden to SPS-related agenci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n effective response system that prepares for the scientific-based implementation of SPS measures and to foster experts in trade disputes related to SPS issues.

Keywords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ispute Settlement Body(DSB),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Agricultural Trade, China

<부록 1> 중국이 제기한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38건)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날짜
59	실목포장재료에 영향을 미치는 잠정규정	홍콩 (중국)	EU	미국	01/11/1998	01/10/2001	2	○	01/08/2014
85	새우와 새우가공식품 수입제한(수입위험분석 개정 관련)	중국, 태국	EU,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호주	01/03/2001	18/10/2007	9	▲	16/10/2013
119	코드린 나방 발견에 따른 중국산 과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긴급SPS통보문, G/SPS/N/PHL/35)	중국		필리핀	01/03/2002		0	▲	
148	식품 위생 법 개정 관련	중국	한국	일본	01/11/2002		0	-	
153	배양 배지에 담긴 중국산 분재(Penjing) 수입금지	중국	EU	미국	01/11/2002	02/04/2008	2	-	
169	살충제 최대잔류허용 기준 규제 통합 및 재개정	아르헨티나, 중국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온두라스,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우루과이	EU	01/06/2003	01/10/2004	1	-	
178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표준 및 규격 개정	중국		일본	01/10/2003		0	-	
191	식품에 대한 살충제 최대잔류허용기준	중국		EU	01/06/2004		0	-	
198	영유아식품의 아플라톡신(aflatoxins)과 오크라톡신 A(Ocratoxin A) 규제	중국		EU	01/10/2004		0	-	
201	살균제 보스칼리드(boscalid) 최대잔류허용기준 관련	중국		일본	01/10/2004		0	-	
203	소 유래 물질 첨가 상품(식품, 화장품 포함)에 관한 규정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	01/10/2004		0	-	
207	차에 대한 살충제 잔류 검출 규정과 검사 방법에 대한 지침	중국	인도	EU	01/03/2005		0	▲	16/10/2013
212	살충제, 수의용 약품, 사료 첨가물의 최대잔류허용 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중국, 미국	호주, 필리핀	일본	01/03/2005	19/10/2011	9	▲	16/10/2013
216	중국 배(Ya) 수입 유예(검은점무늬병 유발이 의심되는 새로운 병원균 (Alternaria sp)의 발견)	중국	EU	미국	01/03/2005		0	○	16/10/2013
221	일본의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표준 및 규격 규정 관련 (아스타크산틴 (Astaxanthin) 검출 기준)	중국		일본	01/03/2005		0	○	16/10/2013
222	열처리된 짚과 사료작물에 대한 수입 유예	중국		일본	01/06/2005	02/04/2008	3	○	01/04/2008
241	크리스마스 나무 수입제한	중국		미국	01/06/2006	02/04/2008	3	○	16/10/2013

(계속)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날짜
256	중국산 닭 조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중국		EU	18/10/2007	28/10/2009	3	▲	08/10/2008
267	최대잔류허용기준 관리 강화	중국, 미국	에콰도르, 뉴질랜드	일본	24/06/2008	29/06/2010	5	-	
269	중국산 배 수입제한(병해충위험분석 지연 관련)	중국		미국	24/06/2008	23/06/2009	3	-	
277	아시아매미나방 검역지역에서의 선박 및 화물 이동과 관련된NAPPO 규제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08/10/2008	29/06/2010	4	○	16/10/2013
282	육류, 가금육, 또는 계란이 소량 함유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	중국	일본, 한국	미국	23/06/2009		0	-	
284	중국산 목재 수공업품 수입 규제	중국		미국	23/06/2009	29/06/2010	3	○	16/10/2013
289	메기 생산과 검역에 관한 조치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28/10/2009	27/10/2016	8	-	
297	애완동물용 식품 수출기업 등록 관련	중국		캐나다	29/06/2010		0	○	16/10/2013
299	미국의 식품안전강화법(Food Safety Enhancement Act of 2009) 관련	중국, 인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미국	29/06/2010	27/03/2012	4	-	
322	폴리아미드와 멜라민 플라스틱 부속용품	중국, 홍콩 (중국)		EU	30/03/2011	19/10/2011	2	-	
330	인도네시아 항구 폐쇄	중국, EU, 뉴질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한국, 남아공, 대만, 태국,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27/03/2012	26/03/2015	7	▲	16/10/2013
331	밀가루에 대한 알루미늄 검출 기준	중국		EU	27/03/2012		0	-	
352	미국의 cGMP 개정과 식품현대화법 재정 관련	중국		미국	27/06/2013		0	-	
357	식품안전 감독과 증명서 발급을 수행하는 제3자 기관의 승인에대한 문제	중국	벨리즈, 브라질, 한국	미국	16/10/2013		0	-	
377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제 인증 규제	중국		브라질	09/07/2014		0	-	
382	유럽연합의 내분비교란 화합물 구분을 위한 규정 개정	아르헨티나, 중국, 에콰도르,	호주, 베냉,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캐나다,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EU	25/03/2014	07/11/2019	15	-	

(계속)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날짜
		과테말라, 인도, 파나마, 파라과이, 미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감비아, 가나, 기니,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한국,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공, 대만, 태국, 토고, 우루과이, 베트남, 잠비아, 칠레, 러시아						
415	미국의 해산물 수입 감독 프로그램	중국		미국	27/10/2016	12/07/2018	5	-	
44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Decision 2002/994/EC가 규정하는 특정물질 미검출 증명 의무 관련-항생제(동물의약품), 살균제, 색소 등과 관련된(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트로프란(nitrofurantoin), 말라이트 그린(malachite green), 크리스탈바이올렛(crystal violet) 등).	중국		EU	12/07/2018	18/07/2019	4	-	
447	유럽연합의 살균제 폴펫(Folpet)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MRL 기준 관련	중국		EU	12/07/2018	07/11/2019	4	-	
459	New EU MRLs for lambda-cyhalothrin	중국	파라과이	EU	18/07/2019	07/11/2019	1	-	

주: ▲는 부분해결, ○는 해결, -는 미보고를 의미함.

자료: WTO SPS IMS (출처: <http://spsims.wto.org/> 최종 검색일: 2020. 7. 11.)

<부록 2> 중국에 제기된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32건)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날짜
114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생산한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관련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중국	01/03/2002	01/11/2002	2	-	
115	초파리 관련 감귤류 및 기타 과일에 대한 수입제한	아르헨티나		중국	01/03/2002	01/03/2006	2	○	01/03/2006
127	네덜란드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EU		중국	01/06/2002	01/06/2003	3	○	01/06/2003
128	화장품 수입요건	EU		중국	01/06/2002	01/06/2003	2	○	16/10/2013
142	대장균 불검출 기준	미국		중국	01/11/2002		0	-	
143	목재 포장재 규정	EU		중국	01/11/2002	01/06/2003	1	○	13/10/2010
157	수산물의 출입을 위한 방역대책	EU	미국	중국	01/04/2003	01/06/2003	1	○	01/06/2003
184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의 식품 수출 공인 증명 요건 통보 (G/TBT/N/CHN/1209) 관련	이스라엘,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EU, 과테말라,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중국	01/03/2004	18/07/2019	7	-	
196	미국산 가금육 수입금지(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주로부터의)	미국	캐나다	중국	01/10/2004	01/03/2005	1	○	01/03/2005
246	다이옥신에 의한 동물 유래 제품 수입제한	EU		중국	28/02/2007	18/10/2007	1	○	01/10/2007
251	생고기와 가금육에 병원균 불검출기준 적용	미국		중국	27/06/2007		0	-	
255	지역화 적용 및 소고기 금지	브라질		중국	27/06/2007	18/10/2007	1	○	11/11/2013
259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미국산 (미국 7개 주) 닭고기 수입금지	미국		중국	18/10/2007		0	-	
261	미국 사과(Golden Delicious, Red Delicious 품종) 수입제한조치	미국		중국	18/10/2007		0	-	
278	중류주 및 통합주류의 위생기준	멕시코	EU, 파라과이, 미국	중국	25/02/2009	21/03/2013	5	-	
279	인플루엔자 A/H1N1 관련 돼지고기 제품 수입 제한	멕시코	호주, 브라질,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아르메니아, 바레인, 중국, 가봉, 인도네시아, 요르단, 수리남	23/06/2009	28/10/2009	1	-	

(계속)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날짜
296	SPS 알람 작업 방식	EU		중국	29/06/2010		0	-	
319	중국 연어 검역 및 검사 절차	노르웨이	EU, 스위스, 미국	중국	30/06/2011	16/10/2013	7	-	
324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등록 및 감독 요건	인도	EU	중국	19/10/2011	27/03/2012	1	-	
329	식품첨가물 시험방법	인도		중국	27/03/2012		0	-	
345	프탈레이트 관련 수입조건	EU		중국	21/03/2013	27/06/2013	1	○	30/06/2016
354	일본 원전 사고 대응 수입 제한	일본	홍콩(중국), 대만	중국	27/06/2013	22/03/2017	10	-	
360	제비 둥지(swallow nests) 수입 정책	인도네시아		중국	16/10/2013	26/03/2015	1	○	26/03/2015
363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제한	브라질		중국	16/10/2013		0	○	02/11/2017
383	중국의 소고기 대책	인도		중국	26/03/2015	16/03/2016	2	-	
389	중국 수입 체제, 생선 검역 및 검사 절차 포함	노르웨이		중국	15/07/2015	14/10/2015	1	-	
392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중국의 수입 제한	EU		중국	15/07/2015	01/03/2018	8	-	
395	중국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도 개정 관련	파라과이, 미국		중국	15/07/2015	18/07/2019	9	-	
405	슈말렌베르(Schmallenberg)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수입 제한	EU		중국	16/03/2016		0	-	
406	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	EU, 미국		중국	16/03/2016	07/11/2019	10	-	
416	중국의 신선망고스틴 수입 금지	인도네시아		중국	27/10/2016	02/11/2017	2	-	
460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미국		중국	18/07/2019		0	-	

주: ▲는 부분해결, ○는 해결, -는 미보고를 의미함.

자료: WTO SPS IMS (출처: <http://spsims.wto.org/> 최종 검색일: 2020. 7. 11.)

<부록 3> 타국이 제기한 현안을 중국이 지지한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14건)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날짜
102	화분에 대한 수입 제한	EU	중국	미국	01/07/2001	19/10/2011	6	-	
134	동물성 제품에 대한 위생검역조치	몰도바	중국	Romania	01/06/2002		0	○	16/10/2013
144	과일 및 과일 주스 수입 제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중국,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우루과이	EU	01/11/2002	01/06/2003	2	○	11/11/2013
159	비식용 용도의 동물 부산물 관련 수입 제한 또는 금지 조치 관련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01/04/2003	01/06/2004	4	-	
167	꿀 수입금지	미국	중국, 멕시코	EU	01/06/2003		0	○	
183	ISPM 15 구현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중국, 콜롬비아, 멕시코, 파라과이		01/10/2003	01/03/2004	1	▲	16/10/2013
185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가금육 수입제한 조치	EU,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인도	01/03/2004	19/10/2011	16	-	
199	목재 포장재 규제 관련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멕시코, 필리핀	EU, 스페인	01/10/2004	01/10/2005	3	○	16/10/2013
231	계피 제한	스리랑카	중국	EU	01/10/2005	01/10/2006	1	○	01/10/2006
238	유럽 의회와 참신한 식품 위원회 규정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Novel Foods)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베냉, 볼리비아, 칠레, 중국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인도,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필리핀, 우루과이, 볼리비리안	EU	01/03/2006	22/03/2017	22	-	
283	농약 최대 잔류물 수준(MRL)	브라질, 에콰도르	중국	일본	23/06/2009	19/10/2011	4	▲	11/11/2013
300	EC 규정 번호 1099/2009	인도	중국, 베트남	EU	29/06/2010	30/06/2011	3	-	
354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	일본	홍콩(중국), 대만	중국	27/06/2013	22/03/2017	10	-	
454	MRLs 및 국제 협의를 위한 EU 과도기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터키, 미국	EU	21/03/2019	18/07/2019	1	-	

주: ▲는 부분해결, ○는 해결, -는 미보고를 의미함.

자료: WTO SPS IMS (출처: <http://spsims.wto.org/> 최종 검색일: 2020. 7. 11.)

「통상법률」 연구윤리규정

2009. 6. 30 제정

제1장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에 게재할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상법률」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저자 등의 연구윤리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 등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 저자(역자)(단독연구의 경우)나 저자(역자)의 순서(공동연구의 경우)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에 공헌이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주, 서문, 상의 등에서 감사를 적절하게 표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4조(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인 연구결과 포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저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투고 및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본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의 공유) ① 연구결과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그 연구결과와 재분석을 통한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그 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학술지가 정한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통지 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0조(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복투고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제13조(서약)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각각 (별지2)와 (별지3)의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실을 알린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칙) 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이 경우의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5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장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결과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한 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통상법률」 제00호)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귀중

논문제목 :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저자(들)은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통상법률」 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저자(들)은 본 논문이 「통상법률」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통상법률」에 위임합니다.

200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 속	이메일(연락처)	위임여부(O,X)	서 명
제 1 저 자					
교 신 저 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별지2)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편집위원용)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편집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 여부를 결정함
2.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취급함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
4. 투고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5.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함

20 년 월 일

편집위원 ○ ○ ○ ㉠

(별지3)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심사위원용) (2009. 6. 30. 신설)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심사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음
2. 심사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편집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사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함
4. 심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음
5. 심사논문의 중복투고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6.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함, 부정인용 및 참조를 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 ○ ㉠

「통상법률」 원고 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 2003년 1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사대상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통상법률」 원고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통상법률」誌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원고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통상법률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7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해당분야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해당분야의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임무)

-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
 2. 원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 취소 여부 결정
 4. 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법률」誌 발간을 위한 기본 방침과 편집방향
 2. 기획논단 주제 선정
 3. 기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편집위원의 위촉
 2. 제4조 제4항에 따른 간사 및 편집자문위원의 지명
 3. 제6조 제1항의 편집회의 주재
 4.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5. 제8조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교체
 6. 제11조 제4항에 따른 원고 게재 여부의 결정
 7. 기타 「통상법률」誌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재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의 임기)

-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자문위원으로서의 임기는 편집위원 임기 만료시 함께 종료된다.
- ② 편집위원이 임기의 개시에 앞서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임기 중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임자 충원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이미 착수한 업무는 충원 후에도 완결한다.
- ④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임무)

-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②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한 추가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원고의 심사

- 제9조(심사 대상) ①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모든 논문(판례평석 포함)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론,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은 별도의 심사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통상법률」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은 「통상법률」誌의 원고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법조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④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지체없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 결과를 신속히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기준)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통상법률」 원고작성방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6. 연구윤리준수
7.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의 질적 수준과 분량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통상법률」誌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심사결과서 양식,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 양식을 송부한다.

② 투고된 원고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 논문의 내용 중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제9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행하되 원고를 송부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심사 기간은 1주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 의뢰 후 3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심사위원을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게재여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 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 원본 파일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법무부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보고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가 가능한 때: 게재 가능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수정 후 게재
 3. 수정·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한 때: 게재 유보
 4.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게재가 불가능한 때: 게재 불가
- ② 심사 결과는 <별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유보’ 의견을 내거나, 1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의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⑤ ‘게재 유보’로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정 또는 보완의 심사 결과 내용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투고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 제한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 ① 투고자는 수정 후 게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수정·보완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투고자는 게재 유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유보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게재 불가에 대한 이의제기)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 결정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를 제기하면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해당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4 장 원고의 게재 등

제17조(원고의 게재)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판정한 원고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한다.

② 「통상법률」誌의 내용은 법무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는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상법률」誌는 매년 2, 5, 8, 11월 20일에 발행한다. 단, 발행예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발행한다.

제18조(자료의 전송)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를 법률문화 발전, 학술진흥 기여 기타 필요한 경우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 즉시 투고자에게 자료 전송 및 제공에 대한 의사를 물어야 하며 7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3년 1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현재 재직 중인 편집위원들은 재위촉되어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통상법률」 원고 작성 방법

제1조(원고의 양식)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원고 작성 요령) ① 원고는 연구논문, 사례연구, 연구자료, 해외동향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원고지 150매 내외 (A4 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목록, 국문 초록, 영문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제목 모두 표기), 필자의 성명(괄호 안에 영문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인적사항,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는 주 저자(책임 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⑥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 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3. 각 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⑦ 목차는 I.,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⑧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⑨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면수, 출판연도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면수, 간행연월

3. 판례 : 대법원 1900. 00. 00. 선고 00다0000판결(법원공보 1900년, 000면) 또는
대판 1900. 00. 00, 00다0000
4.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단, 일본 판결의 경우 선고 일에 평성, 소화 등 연호를 쓸 경우 괄호 안에
서기를 표시한다.
5. 영문성명, 논문명, 서명 등은 각 단어의 첫 자 외에는 반드시 소문자로 표기
한다.
- ⑩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 표기하고,
로마자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p.’와 같은 표시를
생략하고 숫자만을 표기하며,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을 사용한다.
- ⑪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예 :
가석방제도(parole system)]
- ⑫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기재한다.
 1. 저자명, 서명, 출판관련사항은 각 마침표로 구분한다.
 2. 출판관련사항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3. 서양인 저자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성을 먼저 쓰고, 공저의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저자만 성을 먼저 쓴다.
 4. 동일 저자가 작성한 문헌이 복수인 경우, 문헌이 출판된 연도순에 의하여 나
열한다.
- ⑬ 원고 뒷부분에 국문 및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words, 국문 및 영문)를 10개
내외로 기재한다.
- ⑭ 기타 논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
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제4조(원고의 제출) 작성 완료한 논문은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편집위원회의 간사
가 지정한 전자우편(e-mail) 주소로 송부한다.

[편집위원장]

한창완 (국제법무과장)

[편집자문위원]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위원]

김인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성준 (일리노이공과대 시카고 켄트로스쿨 교수)

이재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법률담당관)

계 간 지 통 상 법 률

2020년 11월 26일 발행(통권 제149호)

1994년 5월 20일 등록(97-10-5-11)

발간등록번호 : 11-1270000-000225-07

ISSN : 1598-4915

발행인 : 법무부장관 추 미 애

편집인 : 법 무 실 장 강 성 국

발행처 : 법무부/편집실 : 국제법무과/전화 : 02-2110-3664/FAX : 02-2110-0327

주 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4호

인 쇄 : 성 진 사 : 031-388-4485

[비매품]

INTERNATIONAL TRADE LAW

Vol. 149

November 26, 2020

Publisher Choo, Mi-Ae / Minister of Justice

Editor Kang, Sung-Kook / Deputy Minister for Legal Affairs

Edited in

International Legal Affairs Division

Published quarterly by

Ministry of Justice

※ “통상법률”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